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9.
발의자 : 서일준 · 이현승 · 이종배
서천호 · 정동만 · 신성범
김은혜 · 성일종 · 한지아
박준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 · 해수면 · 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.

또한,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및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등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.

그러나 최근 스쿠버다이빙 등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 중 마을어장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· 채취하는 경우가 많아, 마을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 후 포획 · 채취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,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).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을”을 “안전 또는 어업의 보호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수중레저활동의 제한) ① (생 략)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14조(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<u>안전을</u>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(수중레저활동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</u> <u>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<u>안전 또는 어업의 보호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</u> <u>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</u></p>

<u>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</u>	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